Z - 27 - 2022

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에 관한 세부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
 -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에 관한 세부지침

1. 목 적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업 사업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. 이 지침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이해하는데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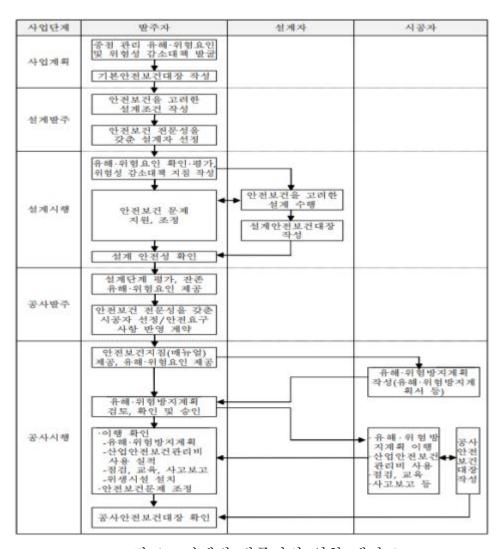
3. 용어의 정의

- 3.1 건설공사 발주자: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 외한다.
- 3.2 건설공사: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3.2.1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
- 3.2.2 「전기공사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
- 3.2.3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- 3.2.4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- 3.2.5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
- 3.3 도급: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(수급인)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, 부탁

한 자(도급인)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(대한민국 민법 제664조)이다.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을 "원도급, 하도급,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"이라고 정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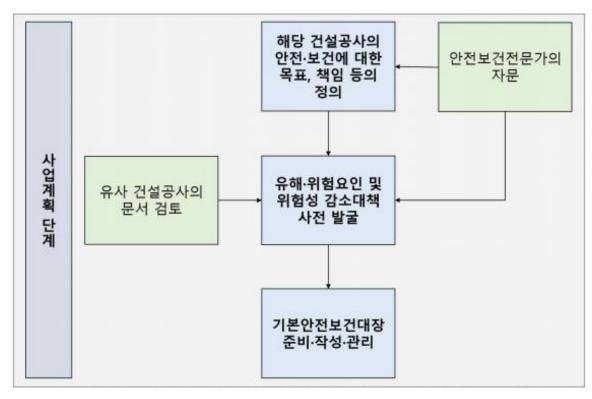
4. 발주자 안전보건활동

발주자는 계획-설계-공사(시공)의 사업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,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의 역할은 <그림 1>과 같다.



<그림 1>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 개념도

- 4.1 사업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
- 4.1.1 발주자는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, 공사 수급업자인 시 공자가 안전·보건관리 업무를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.
- 4.1.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 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4.1.3 발주자는 시공자가 효과적인 안전·보건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4.1.4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, 유사 건설공사의사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. (※ 안전보건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함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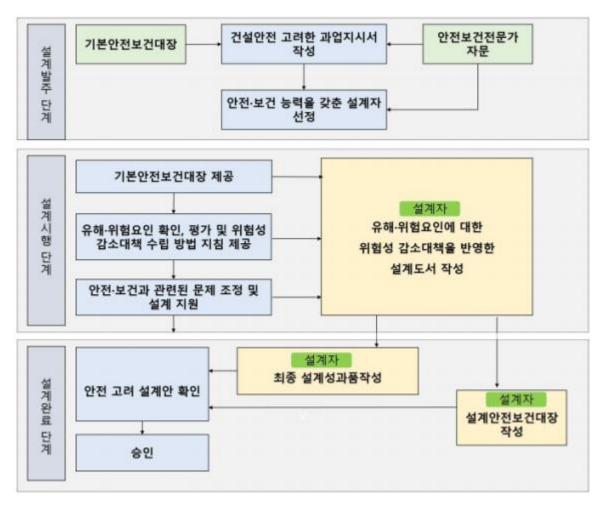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2> 사업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

Z - 27 - 2022

- 4.1.5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·보건에 대한 목표, 역할과 책임 등을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정의하여야 한다.
- 4.1.6 발주자는 유해·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준비·작성·관리하여 한다.
 - (1) 공사규모, 공사예산 및 건설기간 등 사업개요
 - (2) 공사현장 제반 정보
 - (3) 공사 시 유해·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
- 4.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
- 4.2.1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을 작성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.
- 4.2.2 발주자는 설계자의 안전·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4.2.3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계약 시 제공하여야 한다.
- 4.2.4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 관리할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, 유사 건설공사 사고 정보 등 관련 정보와 안전·보건에 대한 목표, 주요 기대사항, 역할과 책임 등을 문서로 설계 초기(계약 시)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4.2.5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 및 평가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4.2.6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안전·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,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4.2.7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.

- 4.2.8 발주자는 유해·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가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 - (1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
 - (2)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
 - (3)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
 - (4)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계획(해당 시)
 - (5)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(해당 시)



<그림 3>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

Z - 27 - 2022

- 4.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
- 4.3.1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입찰내용(입찰설명서)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※ 입찰설명서-공사입찰유의서,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조건 등
- 4.3.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4.3.3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·보건 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 과를 입찰내용(입찰설명서)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4.3.4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·보건 분야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 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4.3.5 발주자는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·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3.6 발주자는 시공자가 잘성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필요시 수정·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3.7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, 유해·위험방지계획과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,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.
 - (1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
 - (2)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따른 공사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조치계획
 - (3)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 및 조치이행 여부
 - (4)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이행여부
- 4.3.8 발주자는 시공자가 유해·위험방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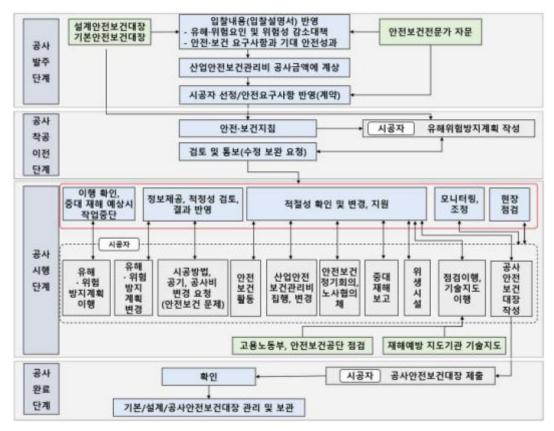
Z - 27 - 2022

검토하고,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4.3.9 발주자는 공사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·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와 공사금액 연장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4.3.10 발주자는 현장의 안전·보건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4.3.11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, 안전·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안전·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한다.
- 4.3.12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하수급 인을 포함한 시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업하고 안전·보건에 대한 법적인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3.13 발주자는 설계변경 및 공사 조건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한다.
- 4.3.14 발주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- 4.3.15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시공자가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 도록 하여야 하며,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3.16 발주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4.3.17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문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(노사협의체) 등을 통해 조정하여야 하며, 근로자들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·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
- 4.3.18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, 기술지도 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.
- 4.3.19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

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문서를 취합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.

4.3.20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안전보건관 리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> 공사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

5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유의 사항

- 5.1 안전/보건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내용의 차이 이해가 필요하다.
- 5.1.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1)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Z - 27 - 2022

- (2)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(3)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
- (4)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- 5.1.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 추가적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,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인력 과 조직을 편성하고, 체계를 수립하고, 절차를 마련하고, 확인하고, 점검해야한다.
- 5.1.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인력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지만,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, 경영진 주도로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.
- 5.2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.
- 5.2.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8호는 이를 구체화해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, 용역,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.
 - (1) 업무를 도급, 용역,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
 - (2) 업무를 도급, 용역,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, 그리고 그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
- 5.2.2 중대재해처벌법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,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.
- 5.3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.
- 5.3.1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건설기술진흥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으므로, 건설사들은 관계 법령의 현황, 개정 사항 등을 주기적으

Z - 27 - 2022

로 확인해야 한다.

5.3.2 특히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, 설계자, 시공자 등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, 각 주체별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건설안전특별법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
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2. 12. 29.

○ 개정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
○ 개정사유 : 가이드라인 고도화

○ 주요 개정내용

- 1. 목적 변경

- '5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유의 사항' 추가